

# 직무청렴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과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간에 청렴의무 준수를 위한 직무청렴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직무상의 청렴도를 증진시켜 공단의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본부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청렴의무의 내용)** ① 본부장은 공단 직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공단 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에 정한 청렴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청렴의무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 하는 행위
3.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관련 공단 퇴직자에게 특혜 등을 주는 행위
5. 직무관련자를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소개하여 특혜 등을 주는 행위
- 6. 경조사 시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거나 직원 등 제3자를 통하여 대리 통지를 하도록 하는 행위**
7.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비밀누설 등 관련 법령과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제4조(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① 본부장은 제3조에 정한 청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계약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퇴직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이내에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및 계약내용을 적용한다.

**제5조(제재내용 및 절차)** ① 본부장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 확정된 때에는 본부장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당해 연도분 성과 연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형벌의 양형과 처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제재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1. 금고 이상의 형벌 : 성과연봉 전액

2.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형 : 성과연봉의 2분의1

③ 제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이사회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재와 관련하여 본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재를 받은 본부장이 이사회 의결사항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의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이 퇴직하였으나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으로 제2항에서 정한 형이 퇴직일로부터 계약근무기간 상당기간 이내에 확정된 경우 본부장은 제2항의 이사회 의결에 따를 의무가 있다.

**제6조(손해배상의 청구)** 본부장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단은 본부장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석 등)** ①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하에 이 계약을 체결한다.

2015년 월 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 ○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

○ ○ ○